

교수평가시 특허도 논문으로 인정"

올해부터 대학교수평가에서 특허 1건과 논문 1건이 동일한 인정을 받게된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1년도 산업기술정책방향'에 따르면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건수와 기술이전계약 체결건수가 논문건수와 동일한 평가를 받도록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자부는 또 지역기술혁신거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역 테크노파크별로 기술종합정보망을 가동하고 외국에서 성공한 지역사이언스파크와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기술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과 기술표준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한민족공동체 기술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신혁명의 주역 IMT-2000] 미래 확보해 기술로 줄여야

앞으로 1년반 후면 차세대영상이동전화(IMT-2000) 서비스가 등장한다. IMT-2000은 투자 규모만 수조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인 만큼 장비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촉박한 서비스 일정에 쫓겨 국내 기반 기술이나 콘텐츠 개발을 게을리 하다 보면 자칫 국내 시장을 외국 업체에 고스란히 내줄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 콘텐츠 확보 시급 =

인터넷이 e비즈니스로 확대된데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무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BM)이 대거 등장한 덕분이다. 일본 NTT도코모의 무선인터넷 아이모드(i-mode)가 급성장한 것도 따지고 보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적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IMT-2000은 음성중심 이동통신이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영역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국내 콘텐츠산업도 일대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국내 정서에 맞는 콘텐츠나 캐릭터를 자체 개발하기보다 외국에서 일차 검증된 콘텐츠만을 무분별하게 수입해 올 가능성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엔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그림친구'의 경우 인기 있는 캐릭터는 키티나 짱구 등 대부분 일본 캐릭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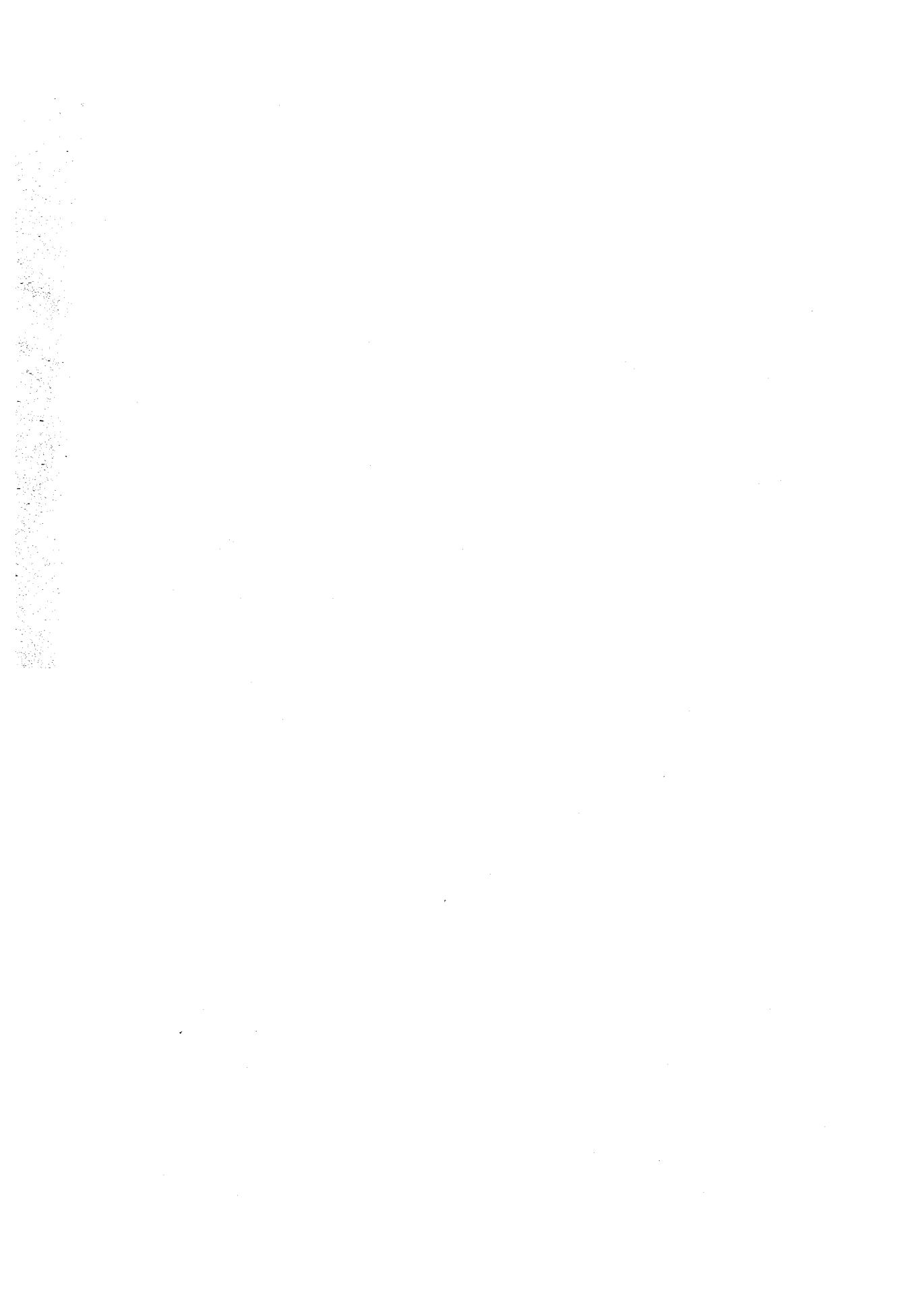
지금과 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국내 무선인터넷 콘텐츠산업 자체가 와해되는 것은 물론 문화종속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 김근태 회장은 "디지털 콘텐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불법복제 방지 등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핵심기술 개발은 가능한가 =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세계 처음으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CDMA 관련장비의 국산화율은 아직도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모뎀칩 등 핵심부품은 여전히 웨일 등 외국업체한테 공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비동기 분야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외국업체들보다 기술개발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상용화 일정에 쫓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특허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각국은 동일한 발명이 여러개 출원됐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출원일과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특허법 통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다.

특허청(www.kipo.go.kr)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선발명주의로 인해 특허법 통일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 설득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변화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1년 후에는 선발명주의 포기 여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은 또 미국이 선발명주의 포기를 선언할 경우 특허법 통일화작업이 급속히 진전돼 향후 2-3년 뒤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조약이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각국은 지난 86년부터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해 작업이 무산됐고 다른 나라에서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특허가 미국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우리기술, 전자고지서 특허로 100억 추가매출 기대

우리기술이 작년 실적이 당초예상보다 부진하지만 올이후 전자고지서 배달시스템 특허취득에 따라 50억원~100억원의 신규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술은 지난 9월 전자고지서 배달시스템으로 특허를 취득해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과 특허료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최소한 50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기존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로 특허를 따게 돼 총 투자비가 30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타기업에서 받게 되는 특허 사용료는 원가가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 90% 이상 경상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 특허사용료 협상이 완결되면 100억원 이상매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이에 대해 “우리기술이 지난 3년동안 매출액과 순이익이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했다”며 “지속적인 R&D투자와 이로 인한 신제품개발능력을 고려할 때 높은 성장성이 예상돼 기계업체 평균보다 높은 PER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나증권은 우리기술의 특허 사용료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목표주가로 1만 4200원을 제시했다.

출처 매일경제

【IT시장】 토종운동화 터널 돌풍

우리 고유 브랜드 운동화가 일본서 나이키 조깅화의 2배 가격에 팔리고 있다.

부산의 특허신발 전문회사 '터널 Corp' 사의 특허신발 '터널'이 주인공이다.

터널화는 신발 바닥면에 작은 구멍(터널)을 뚫는 특허 제조법을 이용해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든 것.

이 제조법은 97년 미국 공인연구기관인 아텍테스팅연구소로부터 '기존 최고급 신발보다 13배나 높은 충격흡수 효과가 있다'는 인증을 받는 등 54개국 특허를 획득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나이키사의 ‘에어펌프’ 기술이 운동화에만 적용할수 있는 데 비해 이 기술은 구두와 전문화는 물론, 자동차 타이어에도 적용할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술력으로 터널화는 현재 일본서 나이키 조깅화(7,000~8,000엔)의 2배 가격인 결례 당 1만 5,000엔(약 1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미 미국지역에 내년 1,000만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터널사는 미국 현지지사와 ‘빅스타사’ 체인망, 일본 신양통상, 영국의 ‘LA스포츠’ EU의 리바이스 전담 공급사, 중국의 ‘중한합자신우유한공사’ 등과 글로벌마케팅 전략적 제휴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인 해외 판촉에 나서기로 했다.

박영설 사장은 “향후 제품 다양화와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 시장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제작 등에 대한 특허료, 전자출원료가 대체된다

- 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 올 1월부터 시행 -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
- ◎ 학생·장애인·영세민 등에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 구료 감면 실시
- ◎ 전자문서로 출원서 제출시 출원료 인하

▣ 특허수수료를 확대감면하기 위한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안이 12월 23일 공포되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지식재산 창출의욕 고취 및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수수료 감면제도를 200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또한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던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되며
-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차원에서 개인발명가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전자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신안·의장·상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출원료가 크게 감면된다.

▣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특허·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에 대하여 개인 및 소기업은 70%, 중소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또는 공·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은 각각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당초 2001년 6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공공연구기관도 수수료감면대상(50% 감면)에 포함시켰다.
- 전자출원제도를 활용하여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실용신안 출원료(20,000 → 16,000원), 의장출원료(66,000 → 60,000원), 의장무심사출원료(53,000 → 47,000원), 상표출원료(65,000 → 57,000원), 상표권

- 존속기간갱신출원료(97,000→89,000원)가 각각 4,000원·6,000원 또는 8,000원씩 인하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등 수수료 면제대상자에게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가 전액 면제되고, 수수료 면제자·개인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료의 70%가 감면되며,
 - 또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청에서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30%,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모두를 첨부할 경우 70%가 각각 감면되고, 특허청이 수수료감면에 대하여 합의한 외국특허청에서 조약에 의거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할 경우 심사청구료의 10%가 감면된다.
 - 특허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심사청구시, 심판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의 출원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개인 : 구비서류 없음
 ○ 면제대상자 : 특허수수료 징수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면제대상자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
 ○ 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인터넷에 공개된 기술은 특허받을 수 없게 된다

- 특허청에 따르면,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에서 미국, 독일 등 많은 참가국들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先行技術(prior art)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WIPO가 추진하는 각국 특허제도 통일화 방안의 일환

2000. 11월 스위스 제네바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나라의 특허법에 의하면,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로서의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는 것에 제한이 있고,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먼저 인터넷상에 공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상의 기술 공개가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 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 그 후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도 있다.
-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WIPO는 세계각국의 특허법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 금번(11월)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도 기존의 서면간행물(paper publication)과 유사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실체에 관한 통일화와 더불어 이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서면간행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특허법개정안의 내용에 이를 미리 반영하고 있다.
 - 즉, 금번 국회에 상정된 특허법개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화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하여는 선행기술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
- 선행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公衆에 알려진 자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 특허제도는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중에 귀속된(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 그러나,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모든 자료가 선행기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거로서의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증거채택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출원일 이전에 공중에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외국에서 口頭로 공개된(oral disclosure outside jurisdiction) 발명내용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함에 어려움이 있어 선행기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즉, 서면간행물은 내용의 변조가 어려우나,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는 공개일자, 공개 내용의 변조가 용이하여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하지만,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즉, 이미 인터넷상의 공개를 통하여 공중에 알려진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 금번 WIPO에서 개최된 특허법상설위원회의 특허법통일화 논의내용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선행기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며,
 - 향후 특허實體법의 통일화가 구체화되면,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행기술로서 사용되게 될 전망이다.
 - 참고로, 이미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고 있는 미국, 유럽특허청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자료가 선행기술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고,
 - 해당 자료가 일정 시간 이상 공개된 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 공개일자 및 내용의 변조에 대한 의심이 크지 않아야 한다.

특허법 규정 대비

현행 규정	개정안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공개된 기술이 선행기술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A 또는 B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A의 기술을 인터넷상에서 보고 동일한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B가 특허권자가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 인터넷상의 기술공개가 일반화되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선행기술로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거가 됨

향후

현행

■ 경우 1

- A가 먼저 서면간행물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 또는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예외 : 신규성상실예외규정 - 특허법 제30조)

■ 경우 2

-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 또는

■ 경우 3

-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B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B의 출원은 A의 공개된 간행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경우 4

- A가 먼저 인터넷에 기술을 공개한 후 A가 특허출원하는 경우 A의 출원은 A 자신이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으로 인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인터넷에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출원을 하여야 함

(발특2001·1)